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이병주 의원 등이 추진 중인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2. 5.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7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2월 1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5,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chaos96@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의사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5

- 입법예고 목록 -

총 7건

1.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5.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광명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7. 광명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2014. 11. 29. 시행) 출납 폐쇄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단축됨에 따라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회계연도의 결산서에 대한 의회 심의·승인 완료가 필요
- 이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여 예·결산 심의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0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함(안 제4조제1항)

4. 개정조례안 : 불 입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신·구 조문 대비표 : 불 입

7.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발췌서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외의 부분 중 “7월 1일”을 “5월 2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년도”를 “연도”로, “10월중에 따로 정할”을 “10월 중에 집회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년도”를 “연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이병주 의원 대표발의
소 관	의회사무국
입 안	이병주 의원 (02-2680-6582)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u>7월 1일</u>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u>년도</u>에는 본회의의결을 거쳐 9월 또는 <u>10월중에 따로 정할</u>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4조(집회일) ① ----- <u>5월 20일</u>----- ----- <u>년도</u>----- ----- <u>10월 중에 집회할</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u>기타</u>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p> <p>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u>기타</u>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며 시장으로부터 다음 <u>년도</u>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① ----- ----- <u>그 밖의</u> ----- ② ----- ----- ----- ----- <u>그 밖의</u> ----- ----- <u>년도</u> -----</p> <p>③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지방자치법 시 행 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u>매년 5월·6월 중에</u> ,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개정 2016. 1. 12.>
지방재정법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u>끝나는 날</u>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구 분 : 전부개정

2. 개정이유

- 광명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별도의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최횟수 저조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위원회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대행 위원회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2조)
-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신·구 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현행 조례 전문 발취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운영하되, 그 기능은 의회 직속으로 설치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조사·연구·자료수집 등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3. 의회에서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등

제4조(준용) 위원회 회의 및 위원 수당·여비지급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소 관	의회사무국
입 안	의원 김정호 (02-2680-2509)

관계법령 발췌서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현행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조사연구·자료수집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3. 의회에서 각종 의안 심의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
4.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이 되며, 의회운영위원장을 제외한 각 상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되고 서기는 의사담당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관 상임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1.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된 전문인사
2.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의 인사
3.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의장은 제2항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후임자가 위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 새로 위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각 상임위원장이 되고 분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간사로 두며,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제3조제4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③ 분과별 회의는 소관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1. 8. 9>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제7조에 따른 회의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 부위원장 · 당연직위원이 협의하거나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8 까지 생략

⑥9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0 및 ⑦1 생략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가 개최횟수 저조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위원회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고, 아울러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 조항의 자구를 정비함

3. 주요내용

-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내용 중, 의회 직속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에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자문 사항” 추가(안 제22조제4호의2)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 연임가능의 임기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새로 의장이 선출되면 이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다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23조제5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신·구 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전부개정)

7.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현행 조례 발취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단서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금융실명 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인 이상 9인 이내”를 “7명 이상 9명 이하”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에도”를 “제3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새로 의장이 선출되면 이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다.

⑥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 중 “의정담당”을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32조 중 “범위 내에서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를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소 관	의회사무국
입 안	의원 김정호 (02-2680-2509)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개
<p>제14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및 ② (생략)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u>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u>」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7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u>금융실명 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u>」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생략)</p> <p>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의회 직속으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속 의원의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소속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소속의원의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등 <p>〈신 설〉</p> <p>5.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4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및 ② (현행과 같음) ③ -----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u> ----- -----</p> <p>제17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 ----- ----- <u>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의회 직속으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현행과 같음) <p><u>4의2.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u></p> <p>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제23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p> <p>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p> <p>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7인 이상 9인 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u>자</u>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명시 소속 공무원 2. 광명시의회 의원 3. 정당의 당원 <p>④ <u>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u>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총 수(數)는 전체 위원 수(數)의 2분의 1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및 2. (생략) <p>⑤ <u>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기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u></p> <p><u><신설></u></p> <p>⑥ <u>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u></p> <p>제27조(간사) ① (생략)</p> <p>② 간사는 광명시의회사무국 <u>의정담당</u>으로 한다.</p> <p>제32조(수당 및 여비)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u>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3조(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7명 이상 9명 이하</u> ----- ----- <u>사람은</u> ----- ----- 1. ~ 3. (현행과 같음)</p> <p>④ <u>제3항에도</u> ----- ----- ----- ----- ----- 1. 및 2. (현행과 같음)</p> <p>⑤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새로 의장이 선출되면 이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다.</u></p> <p>⑥ <u>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u></p> <p>⑦ <u>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u></p> <p>제27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의정팀장</u> ----- -----</p> <p>제32조(수당 및 여비) ----- 범위에서 「<u>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u>」에 ----- ----- -----</p>

관계법령 발췌서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현행 발췌문)

제14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 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 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사전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의회 직속으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소속 의원의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소속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소속의원의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등
5.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광명시 소속 공무원

2. 광명시의회 의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총 수(數)는 전체 위원 수(數)의 2분의 1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계·언론계 등으로부터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기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석의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③ 제25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회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광명시의회사무국 의정담당으로 한다.

제2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수당 및 여비)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운영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행동강령의 운영)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1. 구 분 : 제 정

2. 제안이유

- 노인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등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가 문제화되는 현실에서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기준을 정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우리사회가 핵가족화 및 고령화 추세로 감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 질병, 자식들로부터의 무관심, 사회적 고립 등 노인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적 지원근거 마련 및 노인 계층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및 예방체계 구축(안 제4조 ~ 제5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안 제6조 ~ 제7조)

4. 제정조례안 : 불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 드리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사는 노인에게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 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6.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 중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호스피스’를 지원하는 사항
7.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고독사 위험자에게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서비스,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고독사 위험자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
4.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
5.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 하였을 때에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고순희 의원 대표발의
소 관	사회복지과
입 안	의 원 고순희 (02-2680-2538)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지방자치법	<p>제12조(주민의 자격) <u>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u></p>
노인복지법	<p>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p> <p>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5조(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p> <p>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p>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p> <p>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7조(건강진단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p> <p>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p> <p>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구 분 : 제 정

2. 제안이유

- 광명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 광명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천여 명 이상의 청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예산 지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수화 활성화(안 제5조 ~ 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등(안 제8조 ~ 제9조)
- 민간운영시설의 권장, 표창(안 제10조 ~ 제11조)

4. 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수화”란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각언어를 말한다.
3. “농문화”란 수화를 중심으로 언어공동체를 이루고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화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수화로, 수화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5. “속기사”란 발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6. “자막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수화통역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수화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공연장·관람장·체육관·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편리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활한 서비스 제공 등 각종 복지증진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각장애인 편의증진) ①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광명시는 자막 및 수화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공공 시설 등에 자막 스크린과 수화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시정뉴스와 광명시의회 의정활동 영상물에 대하여 수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할 수 있다.
- ④ 시 지역 내 관공서에 수화영상서비스와 일상생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6조(수화 활성화) ① 시장은 수화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수화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수화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 사용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수화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화책임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7조(수화통역사 및 속기사 지원) 시장은 수화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화통역사와 속기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명시의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수화 활성화를 위하여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5. 수화통역사 및 속기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화경연대회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화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법규를 적용한다.

제10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정보통신·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화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시장은 수화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이 길 숙 의원 대표발의
소 관	사회복지과
입 안	의 원 이 길 숙 (02-2680-2539)

관 계 법 령 발 체 서

관 계 법 령	내 용
장애인복지법	<p>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p> <p>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별표 1과 같다.</p> <p>[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p>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광명시 포상 조례	<p>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 출선수범한 경우

광명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 구 분 : 제 정

2. 제안이유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지원 사업처럼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의 시 지적사항임
- 조례 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차별금지(안 제3조 ~ 제4조)
-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지원사업, 예산의 지원(안 제5조 ~ 제8조)
- 지원중지, 환수조치(안 제9조 ~ 제10조)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제12조)

4. 제정조례안 : 불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광명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광명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 및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정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의견청취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선정된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이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한부모가족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사업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지원 사업
4.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비용의 지원 등)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4.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11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법규를 적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 익 찬 의원 대표발의
소 관	여성가족과
입 안	의 원 김 익 찬 (02-2680-2538)

관 계 법 령 발 체 서

관 계 법 령	내 용
한부모가족지원법	<p>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p> <p>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①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p> <p>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p>

관 계 법 령	내 용
<p>한부모가족지원법</p>	<p>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p>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p> <p>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p>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p>제25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광명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구 분 : 제 정

2. 제안이유

- 그 동안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책무 등 및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제4조)
- 집수리 지원사업 및 공사비용 지원범위 등 규정(안 제6조 ~ 제8조)
-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 우수 집수리업체의 지원 근거를 규정(안 제11조)

4. 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7.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광명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집수리를 활성화하고, 관련 집수리업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층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을 말한다.
2. “저층주거지”라 함은 저층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집수리”란 노후된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집수리업체”란 집수리와 관련된 업을 수행하는 자(단,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 한함)를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저층주거지 내 저층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조례에 따른 점검 및 집수리를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층주거지 내 거주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저층주택 거주민은 누구나 쉽게 집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거주 중인 저층주택 관련 정보를 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광명시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수리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집수리 지원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집수리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집수리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5.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저층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우수 집수리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등록된 업체 사후 점검 및 벌칙사항 포함)
 9. 집수리 지원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
-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광명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저층주택의 점검) ①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20년 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시장은 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수, 결로, 보일러 교체 등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
2. 단열, 창호 등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
3. 균열, 구조보강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층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항

제6조(집수리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집수리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 · 운영
2.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
3. 저층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
4.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또는 집수리업체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공사비용 지원)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각호의 공용시설물의 수리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 등 지원할 수 있다

1. 저층주택의 공용부분 및 공용시설물
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집수리 지원 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제9조 (저층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시장은 효율적인 주택 성능향상과 유지·관리 소요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의 신축에서부터 집수리 시기와 범위, 내용과 비용, 공사업체 정보, 권리관계 변화 등 주택관리 이력제를 도입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층주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집수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1. 주택점검 서비스 제공
2. 집수리 관련 각종 공구 임대
3. 집수리 지원제도 안내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집수리업체 정보 제공
5. 그 밖에 집수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우수 집수리업체 지원) ① 시장은 집수리업체 육성을 통한 저층주거지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우수 집수리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집수리업체는 제7조에 따른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시장에게 해당 업체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등록된 업체의 시공 사후평가 등을 통해 우수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 대상지 인근 우수 집수리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한 홍보, 공사비용 및 보조금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우수 집수리업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협회의 설립) ① 집수리업체는 효율적인 주택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집수리업의 전문화와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수리업체 관련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이하 "협회"라 한다)

② 협회 설립 관련 기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3조(재원)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 그 밖에 보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집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고 순 희 의원 대표발의
소 관	도시재생과
입 안	의 원 고 순 희 (02-2680-2532)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건축법	<p>제35조의2(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다.</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건축법시행령	<p>제23조의7(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 방법 2. 누전(漏電) 및 누수(漏水) 점검 방법 3. 간단한 보수 및 수리 지원 4.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법률 상담 5. 건축물의 개량·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